



## 인적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p>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p> <table border="1"> <tr> <td>부양가족</td> <td>직계존속</td> <td>직계비속</td> <td>형제자매</td> <td>위탁아동</td> <td>수급자</td> </tr> <tr> <td>나이요건</td> <td>60세 이상</td> <td>20세 이하</td> <td>60세 이상 20세 이하</td> <td>6개월 이상 양육</td> <td>없음</td> </tr> </table> <p>*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p>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6개월 이상 양육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table border="1"> <tr> <td>공제대상</td> <td>경로우대 (70세 이상)</td> <td>장애인</td> <td>부녀자 (부양/기혼)</td> <td>한부모</td> </tr>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able> <p>*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적용)</p>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연금보험료 및 특별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보험료	전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 보험료	전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 보험료					
	주택 자금	주택 임차 차입금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연 600만원 ~ 2,000만원 한도	<p>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p> <table border="1"> <tr> <th>차입시기</th> <th>공제한도</th> </tr> <tr> <td>'12.1.1. 이후</td> <td>·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차식 &amp; 고정금리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기타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amp;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600만원</td> </tr> <tr> <td>'11.12.31. 이전</td> <td>·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차식 &amp; 고정금리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amp;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amp; 기타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29년 &amp; 기타 : 1,000만원 ·상환기간 15년 미만 &amp; 기타 : 600만원</td> </tr> </table>	차입시기	공제한도	'12.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 고정금리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600만원
차입시기	공제한도							
'12.1.1. 이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 고정금리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기타 :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600만원							
'11.12.31. 이전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 고정금리 : 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 (비거차식 or 고정금리) : 1,800만원 ·상환기간 30년 이상 & 기타 : 1,500만원 ·상환기간 15년~29년 & 기타 : 1,000만원 ·상환기간 15년 미만 & 기타 : 600만원							

## 그 밖의 소득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 저축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12.31 이전 가입)의 경우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p>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p> <p>*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자는 300만원, 1억원 초과자는 200만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p>
	주택마련 저축	연 12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 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연간 300만원 한도)의 40% 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그 밖의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소득법 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의 10% (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천만원 이하분 100%,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신용카드	[공제 한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
		총급여액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추가공제]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도서·신문·영화관람료 등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해당	
①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합하여 300만원 추가공제 (총급여 7천만원초과자는 200만원)			
②'23대비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5%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추가공제(한도 100만원)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벤처 1,500만원)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청년형 장기 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총급여액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이하인 거주자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소득법제16조제1항제3호, 4호 및 제6호 제외),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세액감면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200만원	<b>감면 대상자</b>			
			<b>구분</b>	<b>요건</b>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2017년 이전 15~29세 이하)		
			고령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3.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4.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써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경력 단절 여성	1.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2년이상 근무 2.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3.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4.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특수관계인 제외		
			<b>감면율 및 한도</b>			
			<b>감면 대상자</b>	<b>취업일</b>	<b>감면율</b>	<b>감면한도</b>
			청년	2023.1.1.~	90%	200만원
				2016.1.1.~2022.12.31	70%(2018년 이후 90%)	150만원
				2014.1.1.~2015.12.31.	50%(20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2012.1.1.~2013.12.31.	100%(2018년 이후 90%)	한도 없음
60세이상자 장애인	2023.1.1.~	70%	200만원			
	2016.1.1.~2022.12.31	70%	150만원			
	2014.1.1.~2015.12.31.	50%	한도 없음			
경력단절여성	2023.1.1.~	70%	200만원			
	2017.1.1.~2022.12.31	70%	150만원			
※ 감면기간 :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의 2018년도 이후 귀속분은 5년						

세액공제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20·50·66·74 만원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공제 ※ 공제한도 : 총급여액 3,300만원 이하(74만원)·7천만원 이하(66만원)·1억2천만원 이하(50만원)·그 외 20만원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결혼세액 공제	1명당 50만원	1명당 50만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 * '24년부터 '26년까지의 기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		
	자녀	기본 공제대상	전액	기본공제대상(8세 이상)자녀가 1명일 때 15만원, 2명일 때 35만원, 3명이상일 때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출산·입양	전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연금 계좌	한도내 전액	한도내 전액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연 3백만원 한도)에 해당금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 이하는 15%)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12%			
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지출한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납입액(연간 1백만원 한도)의 15%	
	의료비	① 본인 등	전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 공제대상금액 한도 : 본인 등*(전액), 부양가족(연 700만원) * 본인 등 : 본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시술비	
		② 부양가족	연 105만원 전액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당 300만원 한도
		초·중· 고생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유학 요건 충족 : 고등학생제외), 대학입학전형료, 수능 응시료, 교복구입비(중·고생 50만원 이내), 현장 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 자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 공제대상 한도 근로 소득금액 100%	기부금액 100/110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3천만원 초과분 25%)
		고향 사랑 특례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500만원	기부금액의 100/110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한도내 전액	근로소득금액 100%	
		우리 사주		근로소득금액 30%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3천만원 초과 40%
		일반 (종교외)		근로소득금액 30%	
		일반 (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 공제		연 13만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 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이자	전액		('95.11.1. ~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 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150만원 (170만원)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1,00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